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 획 홍 보 과 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2094-0470~5

중랑구보

제1621호 2010. 2. 25.

공 고

제2010-133호 묵 제3구역 (묵2동 2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2

제2010-134호 묵 제4구역 (묵2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8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중 랑 구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133호

묵 제3구역 (묵2동 2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묵2동 233번지 일대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5일

중 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02.25 ~ 2010.03.29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묵2동 2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070-7107-9945)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3-31번지 일대	18,511.8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획지계획 : 15,963.5㎡(공동주택용지 : 14,951.0㎡, 종교대체부지 : 1012.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047.8㎡, 공원 1,500.5㎡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7.32%(18%이하)
- 용적률 : 299.77%(300%이하)
- 층 수 : 지하3층, 지상최고 32층,
- 건립세대 : 388세대 아파트 4개동

60㎡이하 : 92세대(23.71%), 85㎡이하 : 187세대(48.20%), 85㎡초과 : 109세대(28.09%)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묵동 233-3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묵동 233-31번지 일대	-	증) 18,511.8	18,511.8	-

나. 정비구역 지정사유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 3. 23)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8,511.80㎡	-	18,511.80㎡	100.0	
주거지역	소 계	18,511.80㎡	-	18,511.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110.70㎡	감 9,110.70㎡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104.50㎡	감 4,104.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296.60㎡	증 13,215.2㎡	18,511.80㎡	100.0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m)	위 치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49	20~36	보조간선	일반도로	4,050	묵동	면목동	-	63.12.24 서고788	망우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정리
변경	중로	1	49	20~36	보조간선	일반도로	4,050	묵동	면목동	-	63.12.24 서고788	도로 가각전제
기정	대로	1	18	35~38	보조간선	일반도로	10,950	상봉동	상계동 시계	-	69.08.27 건고503	
신설	중로	1	A	20	보조간선	일반도로	100	묵동 234-41	묵동 234	-	-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39	묵동 235-1	묵동 235-90	-	-	미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계획된 도로]
변경	중로	3	A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39	묵동 235-1	묵동 235-90	-	-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성과에 따름

■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 묵2동 233-22번지 일대	-	1,500.5	1,500.5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준면적 (㎡)	계획면적 (㎡)	비 고	
신설	관리사무소	도면참조	26.90	143.91	· 10㎡+(건립세대수-50)× 0.05㎡	50세대
신설	휴게시설	도면참조	-	1개소	· 500세대당 1개소, 매 500세대 초과마다 1개소	
신설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588.0	719.65	· 300㎡+(건립세대수-100)× 1㎡	100세대
신설	경로당	도면참조	63.8	91.58	· 40㎡+(건립세대수-150)× 0.1㎡	100세대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8,511.8	획지1	14,951.0	묵2동 233-31번지 일대	99	-	-	99	-	

- 건축시설계획(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항 포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연면적(㎡)</th><th rowspan="2">건폐율(%)</th><th rowspan="2">용적률(%)</th><th rowspan="2">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3">신설</td><td rowspan="3">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td><td rowspan="3">18,511.8</td><td>획지 1</td><td>14,951.0</td><td>묵2동 233-31 번지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td><td>67,000 이하</td><td>18 이하</td><td>300 이하</td><td>최고32층 (평균29.24층)</td></tr>
<tr><td>획지 5</td><td>506.0</td><td>묵2동 233-57 번지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 6</td><td>506.5</td><td>묵2동 233-105 번지일대</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건립규모 및 비율(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 개정)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세대수(임대 또는 장기전세)</th><th colspan="2">면적(임대 또는 장기전세)</th></tr>
<tr><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전용면적(㎡)</th><th>비율(%)</th></tr>
<tr><td>계</td><td>388</td><td>100.0</td><td>64,950.64</td><td>100.0</td></tr>
<tr><td>60㎡이하</td><td>92(64)</td><td>23.71</td><td>11,024.34
(5,293.57)</td><td>16.97</td></tr>
<tr><td>60~85㎡이하</td><td>187</td><td>48.20</td><td>30,659.60</td><td>47.21</td></tr>
<tr><td>85㎡초과</td><td>109</td><td>28.09</td><td>23,266.70</td><td>35.82</td></tr>
</table>
○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60㎡ 이하는 전체세대수의 20%이상)
- 85㎡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71.91%
- 85㎡이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64.18%
(60㎡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23.71%)
○법적상한용적률에따른 재건축소형주택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 50%}
- (299.77%-229.28%)× 50%=35.25%(연면적 환산:5,270.23㎡)
- 5,293.57㎡/82.71㎡(전용 59.96㎡)=64세대
(임대주택 또는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대지 및 도로 경계부분 : 3m</td></tr>
</table>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경관분석 참조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환경성 검토 참조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환경성 검토 참조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북측으로 공릉초교(300m), 남측으로 묵현초교(600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 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해당없음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묵2동 233-31 번지 일대	14,951.0㎡	

아.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묵2동 233-3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현황 : 216세대 (92)세대 계획 : 388세대 증) 172세대	해당사항 없음

공 람 의 견 서

(접수번호 :)

□ **대상사업**

안 건	중랑구 묵2동 23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사업위치	중랑구 묵2동 233번지 31번지 일대

□ **의견제출자**

성 명	(☎ :)	
주 소		
소유물건	위 치	
	규 모	

□ **제출의견**

2010.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중 랑 구 청 장 귀 하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134호

묵 제4구역 (묵2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묵2동 237번지 일대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5일

중 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0.02.25 ~ 2010.03.29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묵2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48-9073)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35)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14,708.40	

3.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청 내용

가. 제 목 :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2,456.9㎡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681.5㎡, 공원 570.0㎡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9.20%(30%이하)
- 용적률 : 241.60%(242%이하)
- 층 수 : 지하2층, 지상최고 15층,
- 건립세대 : 271세대 아파트 6개동

60㎡이하 : 27세대(9.96%), 85㎡이하 : 205세대(75.65%), 85㎡초과 : 39세대(14.39%)

4. 정비구역지정 (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묵동 237-45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	증) 14,708.40	14,708.40	-

나. 정비구역 지정사유

◦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 3. 23)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708.4㎡	-	14,708.4㎡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4,708.4㎡	-	14,708.4㎡	100.0	
※ 대상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평균층수 13층으로 완화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08	묵동 240-175	묵동 240-162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설	소로	2	B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42	묵동 388	묵동 236-24	-	-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정	소로	2	C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46	묵동 237-93	묵동 237-52	-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계획도로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성과에 따름

■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 묵2동 237-77번지 일대	-	570.0	570.0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준면적 (㎡)	계획면적 (㎡)	비 고	
신설	관리사무소	도면참조	21.05	196.3	10㎡+(건립세대수-50)× 0.05㎡	50세대
신설	휴게시설	도면참조	-	1개소	500세대당 1개소, 매 500세대 초과마다 1개소 설치	
신설	어린이놀이터	도면참조	471.00	481.00	300㎡+(건립세대수-100)× 1㎡	100세대
신설	경로당	도면참조	52.10	81.40	40㎡+(건립세대수-150)× 0.1㎡	100세대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708.4	획지 1	12,456.9	묵2동 237-45번지 일대	94	-	-	94	-	

- 건축시설계획(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항 포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연면적
(㎡)</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신설</td><td>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td><td>14,708.4</td><td>획지
1</td><td>12,456.9</td><td>묵2동
237-45
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td><td>42,000
이하</td><td>30
이하</td><td>242
이하</td><td>최고15층
(평균13층
이하)</td></tr>
<tr><td colspan="3" rowspan="7">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건립규모 및 비율(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9. 7. 30 개정)</td></tr>
<tr><td colspan="8"><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세대수(임대 또는 장기전세)</th><th colspan="2">면적(임대 또는 장기전세)</th></tr>
<tr><th>세대수(세대)</th><th>비율(%)</th><th>연면적(㎡)</th><th>비율(%)</th></tr>
<tr><td>계</td><td>271</td><td>100.0</td><td>41,366.49</td><td>100.0</td></tr>
<tr><td>60㎡이하</td><td>27(8)</td><td>9.96</td><td>2,888.46
(623.76)</td><td>6.98</td></tr>
<tr><td>60~85㎡이하</td><td>205</td><td>75.65</td><td>30,492.02</td><td>73.71</td></tr>
<tr><td>85㎡초과</td><td>39</td><td>14.39</td><td>7,986.01</td><td>19.31</td></tr>
</table></td></tr>
<tr><td colspan="8">○주택재건축 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60㎡ 이하는 전체세대수의 20%이상)
- 85㎡이하 주택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85.61%
- 85㎡이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 80.69%
○법적상한용적률에따른 재건축소형주택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상용적률)× 50%}
- (241.6%-231.5853%)× 50%=5.00735%(연면적 환산:623.76㎡)
- 623.76㎡/77.97㎡(전용 59.79㎡)=8세대
(임대주택 또는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대지 및 도로 경계부분 : 3m</td></tr>
</table>

※ 건축물의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경관분석 참조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 방안 강구	환경성 검토 참조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환경성 검토 참조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남측으로 묵현초교(400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 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해당없음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①	묵2동 237-45 번지 일대	12,456.9㎡	

아.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묵2동 237-45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현황 : 222세대 (108)세대 계획 : 271세대 증) 49세대	해당사항 없음

공 람 의 견 서

(접수번호 :)

□ **대상사업**

안 건	중랑구 묵2동 23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사업위치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 **의견제출자**

성 명	(☎ :)	
주 소		
소유물건	위 치	
	규 모	

□ **제출의견**

2010.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중 랑 구 청 장 귀 하